

제27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 계 과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4. . .
발 의 자	김재우 의원 외 12인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김재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24. . .

발 의 자: 김재우·김근한·김낙관·김민성
김원섭·김정도·박교상·신용하
양진오·이정희·이지연·정지원
추은희 의원(13인)

1. 제안이유

구미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시장의 책무, 적용범위(안 제3조~제4조)
- 다.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 라. 공공자금 운용 원칙(안 제6조)
- 마. 의회 제출(안 제7조)

3.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41조
- 2) 「지방재정법」 제3조, 제9조
- 3) 「지방회계법」 제38조
- 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 5)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 제36조

나. 부서검토: 회계과, 예산재정과, 징수과 의견제출(붙임)

다. 예산조치: 해당없음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구미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금고”란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미시의 유희자금을 금고에 예치·관리하여 수익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에 적용한다.

제5조(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분기별 세입예산 징수 종합계획
2. 월별·분기별 세출예산 배정 및 집행 종합계획
3. 월별·분기별 공공자금 배정 및 집행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시장은 공공자금을 사업 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이자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속 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 제출 등) ① 시장은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보고받은 공공자금 운용 상황 보고서를 상·하반기 별로 구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공자금 운용 상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금과목별 금액
2. 예치기간
3. 금융상품별 수익률
4. 이자수입 총액

5.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육 등) ①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교육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 등에 시의 공공자금 운용·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 바. (생략)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 카. (생략)

2. ~ 7. (생략)

제141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

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정의) ①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관서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서"란 본청, 지방의회사무처(국·과), 제1관서, 기타관서,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을 말한다.
2. "본청"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을 말한다.
3. "실·과"란 관서의 실·과 및 담당관실을 말한다.
4. "제1관서"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법 제31조에 따른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5. "기타관서"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6. "관서의 장"이란 지방의회사무처(국·과)장관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 및 법 제48조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공무원 중 관리책임자를 말한다.

② ~ ③ (생략)

제36조(재정자금의 통합운용) ① 통합재정자금은 안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하며, 수입 및 지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②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경우에는 통합재정자금의 운용에 준하여야 한다.
- ③ 통합지출관은 통합재정자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장·단기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운용 환경의 변화와 금고의 예금상품에 대한 수시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통합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 ④ 통합지출관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금운용기록부를 비치하여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하며,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해 가용자금의 규모와 가용기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 ⑤ 세입부서에서는 세입이 발생하면 통합지출관 관리계좌에 이체하여 통합지출관이 유휴자금의 운용관리를 총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⑥ 통합지출관은 자금 수입이 발생하는 때에는 사용 일정에 따라 여유자금을 구분하고,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으로 가입하되,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예금을 해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⑦ 통합지출관은 통합재정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세입자금의 세입, 과오납 금액 및 세출자금의 배정액, 환수액, 지출액 및 반납액, 전입·전출금액 등의 일일현황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금고와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자금현황 파악 및 보고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검 토 의 견 서

부서명: 회계과

조 례 명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p><input type="checkbox"/> 검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거 법령<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p><input type="checkbox"/> 주요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시장의 책무,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운용 원칙에 관한 사항○ 의회 제출에 관한 사항 <p><input type="checkbox"/> 검토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세출예산 자금지출 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금고에서 제출한 공공자금 운용 상황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p>⇒ 조례제정에 따른 시행에 문제사항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됨</p> <p><input type="checkbox"/>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대효과: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공공자금 운용 기대○ 소요예산: 미첨부<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조 례 명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p><input type="checkbox"/> 검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거 법령<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p><input type="checkbox"/> 주요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자금(기금) 운용 및 관리 목적○ 공공자금(기금) 운용 원칙<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자금 사업기간별로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 정기예금 예탁 시 이자수익 최대화 <p><input type="checkbox"/> 검토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원 발의 조례안 검토 결과, 조례 제정으로 기금을 일괄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체계적인 자금 운용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단, 개별기금부서의 검토의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p><input type="checkbox"/>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대효과: 기금의 체계적인 정기예금 예탁으로 이자수익 증대○ 소요예산: 해당없음○ 문 제 점: 해당없음	

부서명: 징수과

조 례 명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p><input type="checkbox"/> 검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거 법령<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41조▪ 「지방재정법」 제3조, 제9조▪ 「지방회계법」 제38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6조 <p><input type="checkbox"/> 주요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시장의 책무, 적용범위(안 제3조~제4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공공자금 운용 원칙(안 제6조)○ 공공자금 운용상황보고서 의회 제출(안 제7조) - 징수과 소관 <p><input type="checkbox"/> 검토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보고받은 공공자금 운용 상황 보고서를 구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규정한 내용임.○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공공자금의 운용과 투명성 증대를 위해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p><input type="checkbox"/>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대효과: 시 금고 공공자금 운용상황 보고 기준을 정립하고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안전성 및 공공성 확보	